한국학연구 제59집 | 373~416쪽 | 2020.11.

원 복속기 遙賀禮(望闕禮)의 거행과 예식 변화상*

-원종·충렬왕대를 중심으로-

최종석**

〈차 례〉

1. 머리말
2. 요하례 거행의 始點과 계기
3. 요하례 예식 구현 양상의 변화 추이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원 복속기에 등장한, 국왕의 황제를 대상으로 한 요하례(망궐례), 즉 황제국에서 거행되는 朝賀禮와 연동하여 여기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고려 국왕이 황제 신하의 위상에서 황제의 명절을 멀리서 경하하는 의례인 요하례(망궐례)를 전론으로 검토하는 최초의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 원 복속기에 들어서 황제국에서 거행되는 조하례와 연동하여 요하례를 거행한 것은 동아시아 지평에서 보더라도 전례가 없는 일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원종 14년(1273) 8월 聖節에 요하례를 처음으로 거행하였을 사실을 논증하였고, 또한 어떠한 이유와 배경에서 전례가 없었던 요하례가 이때 등장하게 되었는지, 원 복속기라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요하례의 예식 양상은 어떠한 모습을 갖춰 갔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요하례 예식의 변화상을 고려-원 관계의 변화를 염두에 둔 채 정동행성(승상)이라는 변수를 그 중요도에 걸맞게 고려하면서 살펴보았다.

[주제어] 遙賀禮, 朝賀禮, 征東行省, 다루가치, 원 복속기, 고려

---

* 이 논문은 2019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1. 머리말

필자는 10여 년 전에 고려후기 遙賀禮[1]를 검토한 바 있다.[2] 고려후기 요하례만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고찰한 것은 아니고, 원 복속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국왕(국가) 위상이 전환된 사실을 부각・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朝賀禮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요하례를 다루었다. 구체적으로는, 조하의례가 군주가 자신의 신하들로부터 경하를 받는 '受朝賀' 의례만으로 치러진 원 복속 이전과 달리, 원 복속 이후로는 '受朝賀' 의례 외에도 황제국에서 거행되는 조하례와 연동하여 여기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고려 국왕이 황제 신하의 위상에서 황제의 명절을 멀리서 경하하는 요하례를 구성 요소로 하게 되었음을 밝혔다.[3] 더 나아가 조하례 측면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원 복속기 들어서 국왕(국가)의 위상이 대외 방면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조차 황제 신하라는 위상이 구현된 변화와 맞물려 진행된 것이었고,[4] 원 복속기에 이루어진 조하의례 방면의 변화상은 질적 변화 없이 조선말기까지 지속되었음을 규명하였다.[5]

이처럼 원 복속기 들어서 조하례가 수조하 의례와 요하례를 구성 요소로 하게 된 변화 및 그러한 변화상이 원 복속기를 넘어서 그 이후로도 지속된 사실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요하례 검토는 그 일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요하례 자체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였다. 자연스레 요하례에 관한 검토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

1) 遙賀禮 외에도 그 동의어로 望闕禮, 向闕遙賀禮, 向闕拜賀禮, 遙拜儀禮 등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遙賀禮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2) 최종석, 「고려시대 朝賀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 『한국문화』 5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3) 원 복속기에 正朝 시의 조하의례는 요하례와 수조하 의례의 조합으로, 황제의 탄일인 성절 시의 조하의례는 요하례만으로, 동지와 군주 탄일 시의 조하의례는 수조하 의례만으로 거행되었다. 이러한 식의 조하례 운영은 동아시아 전체를 상정하더라도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이 제도・관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건, 그 외의 세계에서건 조하의례는 곧 수조하 의례였다.

4) 원 복속 이전에 고려 국왕은 국내에서는 군주의 위상만을 보유하였다.

5) 최종석, 앞의 논문, 2010; 최종석, 「고려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 『민족문화연구』 8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b 참조.

요하례에 대한 관심 부족과 이와 맞물린 이해 부족으로 말미암아 고려후기 요하례를 전론으로 다루는 연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던 차에 후술하듯 요하례와 세트를 이루는 拜表禮에 관한 검토 경험은[6] 요하례 문제에 접근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원 복속기에 배표례의 시작과 운영에 있어 (후기)정동행성(승상)이라는 요인이 심대하게 작용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나서, 요하례 문제에 접근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졸고를 포함하여 기존의 어느 연구에서도 원 복속기 요하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정동행성(승상)이라는 변수를 그 중요도에 걸맞게 고려하지 못해 왔음을 깨달아서다.

고려후기, 그중에서도 원 복속기의 요하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원 복속기 요하례에 관한 연구가 초보적인 검토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사실이었다. 요하례의 측면에서 여러모로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필자의 연구 이후로 원 복속기 요하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고려말기로 확장해 보더라도 정은정의 「14세기 元明교체기의 胡·漢 共存과 개경의 望闕禮 공간」이라는 연구성과만이 있을 따름이다.[7] 물론 2004년도에 발표된 구와노 에이지(桑野榮治)의 선구적인 연구성과가 있다.[8] 구와노 에이지의 연구는 고려말기의 요하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긴 했지만, 원 복속기의 요하례에 관해서도 기초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요하례가 원 복속기에 시작되었음을 주목한 것도 그의 연구에서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고려사』 禮志에 수록된 요하례 사례를 위주로 원 복속기의 요하례를 검토하다 보니, 검토 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수록된 사례들이 거의 특례인 사실을[9] 고려하지 못하고, 도리어 실제 양상을 보여주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 채 각 사례의 함의를 정치

6) 최종석, 「고려후기 拜表禮의 창출·존속과 몽골 임팩트」, 『한국문화』 8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a.

7) 정은정, 「14세기 元明교체기의 胡·漢 共存과 개경의 望闕禮 공간」, 『한국중세사연구』 49, 한국중세사학회, 2017. 이 외에 윤석호(「조선조 望闕禮의 중층적 의례구조와 성격」, 『한국사상사학』 43, 한국사상사학회, 2013)는 조선시대 요하례(망궐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후기 요하례를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8) 桑野榮治, 「高麗末期の儀禮と國際環境－對明遙拜儀禮の創出－」, 『九留米大學文學部紀要(國際文化學科編)』 21, 2004.

9) 이에 관한 논증은 최종석, 앞의 논문, 2010 참조.

사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한 검토 내용은 대개 실제와 부합하지 못한 듯싶다.

이처럼 원 복속기의 요하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 관련 사료가 없다시피 한 사실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이유일 것이다. 고려말기와 달리 儀注도 보이지 않고,[10] 관련 사료는 전후 맥락 없이 등장하는 몇몇 단편적인 기사가 전부이다시피 한다. 자료가 희소하다 보니 탐구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 또한 자료의 제약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사료가 극히 부족한 여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만큼, 또한 좀 더 진전된 이해를 도모하려는 만큼, 추정과 추론에 크게 의지하고 방증과 관련 연구성과에 적극적으로 기대어 자료의 제약을 조금이나마 극복해 볼 수밖에 없다.

관련 자료가 없다시피 한 여건 속에서도 원 복속기의 요하례를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례없이 제후국에서 황제의 명절을 맞아 요하례를 행하게 된 것이 원 복속기 들어서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달리 말해, 어떠한 이유와 배경에서 전례가 없었던 요하례가 원 복속기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원 복속기라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요하례의 예식 양상은 어떠한 모습을 갖춰 갔는지 등의 문제는 어떠한 식으로든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가 고려말기와 조선시대 요하례 이해의 심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선행 작업임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 복속기의 요하례를 대상으로 거행의 始點과 계기 및 예식 구현 양상의 변화 추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지금까지 검토된 바 없다. 본문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요하례 거행의 시점에 관해서는 견해차가 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관한 검토는 어느 쪽에서든 간단히 이루어져 왔다. 요하례 거행의 시점은 기록상으

10)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고려사』 권67, 지21 예9 嘉禮)는 고려말기 요하례 의주에 해당한다.

로 명료하지 않은 만큼, 본고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안에 관한 연구상의 진전을 도모해 보고자 한다. 거행 계기의 경우, 원 복속기에 들어서 황제국에서 거행되는 조하례와 연동하여 요하례를 거행한 것이 전례 없는 일인 데서, 무엇을 계기로 하여 요하례를 거행하게 되었는지는 원 복속기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본격 규명해 볼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요하례 거행이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을 사실도 밝혀볼 것이다.

다음으로, 요하례 예식의 변화 추이를 고려-원 관계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고려-원 관계는 당초에 목표로 정했던 지점에 도달하는 식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 속에 여러 우발적인 요인이 개입하면서 당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지점에 귀착되었을 것인 데서, 요하례 예식의 구현상도 시종일관 같았을 것이라기보다는 고려-원 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변화하고-요하례 자체 내의 변인에 따른 변화도 있었을 것-특정 방식으로 귀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루가치의 파견과 귀환, 정동행성의 置廢, 정동행성의 성격 변화 등은 요하례 예식 구현의 양태에 변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에 이들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예식 구현의 변화상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자료의 제약에서이긴 해도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추정과 추론이 구사되는 등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본고가 원 복속기와 이 시기 요하례에 대한 이해 폭을 조금이나마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요하례 거행의 始點과 계기

1) 원종 14년 8월 聖節 시 요하례의 첫 거행

필자는 과거에 요하례 거행의 始點을 검토하기는 했다.[11] 당시에는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미진한 채 마무리 지었는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요하례 거행의 始點을 재론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충렬왕 원년(1275) 정조에 거행된 요하례를 요하례 거행의 효시로 보는 견해가 있다.[12] 이 견해는 아래 기록을 근거로 한다.

> (충렬왕 1년 1월 계유) 朝賀를 放하였다. 여러 신하를 이끌고 멀리서 (황제의) 正旦을 慶賀하고 西殿에서 잔치를 열었다.[13]

국왕이 주체가 되어서 (황제를 대상으로) 멀리서 경하한 '遙賀' 용례는 이 기록이 初出이긴 하다. 위 기록에서 생략된 주체(주어)인 국왕은 群臣을 거느리고 (황제의)正旦을 遙賀하고 있다. 그런데 국왕이 주체가 된 '遙賀' 용례는 아니어도, 문맥상 이에 선행하는 요하례 사례가 있다. 바로 원종 14년(1273) 8월의 다음 기록이다.

> (원종 14년 8월) 왕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聖節을 경하하였다(王率群臣 賀聖節). 다루가치는 자신의 僚屬을 거느리고 오른쪽에 섰다. 上將軍 康允紹 또한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胡服 차림으로 곧장 들어왔는데, 스스로 客使를 모방하여 왕을 보고도 절하지 않았다. 왕이 분노하였으나 제어할 수가 없었다.[14]

'왕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황제의)聖節을 경하하였다(王率群臣 賀聖節)'라는 구절은 성절 시의 요하례 거행을 가리킨다. 비록 국왕이 주체가 되어 '멀리서 성절을 拜賀하였다(遙賀聖節)' 식의 기록은 아니었어도 요하례 거

11) 최종석, 「고려시대 朝賀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 『한국문화』 5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239쪽.

12) 桑野榮治, 「高麗末期の儀禮と國際環境－對明遙拜儀禮の創出－」, 『九留米大學文學部紀要(國際文化學科編)』 21, 2004, 69쪽; 정은정, 「14세기 元明교체기의 胡·漢 共存과 개경의 望闕禮 공간」, 『한국중세사연구』 49, 한국중세사학회, 2017, 196쪽.

13)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1년 1월 계유 "放朝賀 率群臣 遙賀正旦 宴于西殿".

14) 『고려사절요』 권19, 원종 14년 8월 "王率群臣 賀聖節 達魯花赤率其屬立於右 上將軍康允紹亦率其黨 胡服直入 自比客使 見王不拜 王怒而不能制".

행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15] 이를 약간 부연해 보겠다.

'賀聖節' 용례는 거의 대다수가 가령 '樞密院使 朴瑺를 원에 보내 聖節을 경하하였다(遣樞密院使朴瑺如元 賀聖節)'[16] 식으로, 국왕이 사신을 원에 보내 성절을 경하하는 사례이다. 국왕이 황제의 명절을 맞아 자신의 신하를 보내 이를 경하하는 사례는 고려전기부터 있어 온 아주 흔한 일이었다. 가령 "崔忠恭를 거란에 보내 永壽節을 경하하고 이어서 正朝를 경하하였다(遣崔忠恭如契丹 賀永壽節 仍賀正)"[17]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식으로 신하를 보내 명절을 경하하는 기사는 요하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하례는 황제국 궁궐에서 거행되는 조하례와 맞물려 고려 내에서 국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이끌고 몸소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하는 賀禮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원종 14년 8월의 사례는, 신하를 보내 황제의 명절을 경하하는 기사들과 달리, 국왕이 신하들을 통솔한 채 직접 성절을 경하하고 있다. 왕이 국내에 머문 채 황제의 성절을 경하하고 있어, 이 사례는 성절시 요하례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당시에 국왕은 요하례를 거행하는 것과 별도로, 비록 사례는 확인되진 않지만, 관례대로 사신을 보내 성절을 경하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충렬왕 원년(1275) 정조 시의 요하례에 앞서 원종 14년(1273) 8월 성절에 요하례가 거행되었다. 원종 14년 8월 성절 시의 요하례를 요하례 거행의 효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이 이전에 이미 요하례가 거행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전고에서 이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즉 "해당 사례는 康允紹의 국왕에 대한 무례한 행위로 인해 기록된 것일 수 있어 좀 더 이른 시기에 요하 의례가 거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18] 원종 14년 8월 성절 시의 요하례를 처음으로 거행한 것이라 단정하지 못한 것이다. 전고에서는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지만, 여기서는 원종 14년 8월 성절 시의 요하례

15) 간략하게나마 졸고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다.
16)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즉위년 7월 임진.
17) 『고려사』 권6, 세가6 靖宗 4년 11월 기미.
18) 최종석, 앞의 논문, 2010, 239쪽의 각주 70번.

에 앞서 요하례가 거행되었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원종 14년 8월 성절에 거행된 요하례가 요하례 거행의 효시인지 여부를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다.

고려에서 거행되는 요하례는 원 조정에서의 조하례와 맞물려 진행된 까닭에, 원에서 조하례 거행이 시작되고 나서야 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원에서 조하례는 지원 8년(1271, 원종 12) 8월에 시작되었다.

- 世祖 至元 8년 8월 己未에 朝儀를 처음으로 시작하였다.[19]
- (至元 8년) 8월의 황제 생일을 맞아 天壽聖節로 호칭하였다. 朝儀를 사용한 것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20]

원에서 조하례를 포함한 朝儀의 제정은 지원 6년(1269, 원종 10)에 劉秉忠 등의 제의로부터 시작되어 지원 8년에 마무리되었고,[21] 동년 8월에 元朝는 처음으로 제정된 朝儀를 활용하여 성절 예식, 곧 天壽聖節受朝儀를 거행하였다.[22] 제정된 朝儀 가운데 성절 시의 조하례인 天壽聖節受朝儀를 처음으로 실행한 것인데, 이를 시작으로 元朝는 조의 거행이 필요한 때를 맞아서 준비된 조의를 적용하였을 것이다. 조하례에 집중해서 보자면, 지원 9년(1272, 원종 13) 정조를 맞아서 원조는 처음으로 元正受朝儀를 활용하였을 것이다. 이 이후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조와 성절 시에 각각 元正受朝儀와 天壽聖節受朝儀를 거행하였을 것이다.

원에서의 조하례 거행이 지원 8년(1271, 원종 12) 8월 성절 시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감안할 때, 원종 14년(1273) 8월 성절 이전에 요하례를 거

19) 『元史』 卷67, 禮樂1 制朝儀始末 "世祖至元八年秋八月己未 初起朝儀".
20) 『元史』 卷67, 禮樂1 制朝儀始末 "遇八月帝生日 號曰天壽聖節 用朝儀自此始".
21) 王福利, 「元代朝儀的制定及其特點」, 『內蒙古社會科學』, 第 27卷 第 1期, 內蒙古自治区社会科学院, 2006, 57~59쪽.
22) 許正弘, 「元朝皇帝天壽聖節考」, 『成大歷史學報』 第四十四號, 成功大學歷史學系, 2013年 6月, 117쪽. 당시 제정된 朝儀는 『元史』 卷67, 禮樂1에 수록된 元正受朝儀, 天壽聖節受朝儀, 郊廟禮成受賀儀, 皇帝即位受朝儀 등일 것이다.

행했을 수 있는 날은 원종 12년(1271) 8월 성절, 원종 13년(1272) 1월 정조, 원종 13년(1272) 8월 성절, 원종 14년(1273) 1월 정조로 좁혀진다. 네 차례 가능성이 전부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 후보 중에서도 탈락자가 있다. 원종 12년(1271) 8월 성절이 그것이다. 원 지방 아문에서 거행되는 요하례가 원 조정에서의 조하례보다 뒤늦게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大元聖政國朝典章』권28, 禮部1 禮制1 迎接 迎接合行禮數 條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條에는 大司農御史中丞兼領侍儀司事가 至元 8년(1271, 원종 12) 11월 15일에 오르두(斡耳朶)에 上奏하여 승인된 것이 수록되었는데, 上奏 가운데 大司農御史中丞兼領侍儀司事는 '(金代의) 舊例를 檢照하여 外路의 官員이 聖節과 元日 시, 詔赦를 맞이할 시 및 各官이 宣勅을 받을 시의 의례를 開申하였고 그 외에도 거행해야 하는 의례를 조사 검토하여 申覆하였으니 조험하기 바란다'라는 侍儀司의 申을 인용하였고, 또한 '이러한 申을 갖추어 중서성에 呈文을 보냈으니 대조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라는 언급 뒤에 元日外路拜表儀, 外路迎拜詔赦, 送宣, 受勅에 관한 상세한 의례절차를 기술하였다. 비록 원 지방 아문에서의 요하례와 그에 관한 상세한 의례절차가 보이진 않지만, 요하례는 侍儀司의 申에 언급된 '外路의 官員이 聖節과 元日 시에 행해야 하는 의례'에 해당하였을 것이 분명하다.[23]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원 지방 아문에서의 요하례는 빨라야 원종 13년(1272) 1월 정조에야 시작되었을 것이다. 물론 더 늦게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원 지방 아문에서의 요하례와 사실상 동질적이었을 고려에서의 요하례는 원 지방 아문과 마찬가지이거나 뒤늦게 시행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원종 12년(1271) 8월 성절은 선택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나머지 3개 후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의 것일수록 요하례는 거행되지 않고 지

23)『大元聖政國朝典章』卷28, 禮部1 禮制1 迎接 迎接合行禮數 "大司農御史中丞兼領侍儀司事 至元八年十一月十五日 斡耳朶裏奏准 每遇聖節元日詔赦 幷各官宣勅 除沿邊把軍官再行定奪外 諸路官員合無令各官照依品從自造公服迎拜行禮 奉聖旨 除沿邊把軍官外 那般行者 欽此 已經呈覆 今據侍儀司申 檢照到舊例 外路官員 如遇聖節元日詔赦 幷各官受宣勅禮數 開申前去外 有合行禮數 逐旋講究申覆 乞照驗事 備呈中書省 照驗施行 一 元日外路拜表儀……一 外路迎拜詔赦……一 送宣……一 受勅……".번역은 元代の法制 研究班, 「『元典章 禮部』校定と譯注(一)」,『東方學報』81,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2007을 토대로 하였다.

나갔을 공산이 컸을 것이고, 3개 후보 모두를 지나쳤다고 해도 이상할 게 못 되었을 것이다. 그간 황제국의 지방이 아닌 臣屬한 외국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요하례를 거행한 적이 없는 데서, 또한 후술하듯 원(몽골)은 지방 아문의 의례를 복속한 외국에까지 적용하려는 체계적인 사전 계획을 지니고 있지 않은 데서, 고려에서의 요하례가 원의 지방 아문보다 뒤늦게 시작되었을 것은 비교적 확실하였을 것이다.

원종 14년(1273) 8월 기사가 요하 의례의 첫 거행을 계기로 하여 기록되었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이 셋 가운데 하나에 요하례 거행의 효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려에서의 요하례가 원의 지방 아문보다 뒤늦게 시작되었을 것인 데다가, 요하례 효시 정도의 사안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인 데다가, 요하례 거행이 이루어진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은 날을 요하례의 효시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기에, 아무래도 원종 14년(1273) 8월에 거행된 성절 시의 요하례를 요하례의 효시로 보는 편이 가장 확률 높은 추정일 것이다. 다소 억측을 해 보자면, 원종 14년(1273) 8월 기사는 康允紹의 무례한 행위 외에도 그동안 행한 바 없는 요하 의례의 거행을 계기로 하여 기록되었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앞서 소개한 충렬왕 1년(1275) 1월 계유 기록을 근거로 요하례 가운데 정조 요하례는 이때를 시작으로 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24] 이 견해대로라면, 성절 요하례는 원종 14년(1273) 8월에 시작한 데에 비해, 정조 시 요하례는 이보다 뒤늦은 충렬왕 1년 1월 정조에야 시작한 셈이 된다. 관련 기록이 극히 부족하다 보니 이러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듯싶다. 성절 시 요하례와 정조 시 요하례는 구별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1년에 두 차례 거행되는 요하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성절 시 요하례와 구분되는 정조 시 요하례의 효시가 따로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

24) 정은정은 필자의 연구를 인용하여 '정조 요하례는 충렬왕 원년 이후, 성절 요하의는 원종 14년 이후에 거행되었다'라고 하였는데(정은정, 앞의 논문, 2017, 196쪽의 각주 37번), 필자는 원종 14년 8월 성절 시에 요하례가 거행된 것을 계기로 이 이후로 명절인 정조와 성절마다 요하례가 거행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충렬왕 1년(1275) 1월 계유 기사의 기록 계기는 국왕이 '정단에 요하를 거행한(遙賀正旦)' 것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요하례를 거행해서도, 처음으로 정단 시에 요하례를 거행해서도 아니었다. 이 기사가 기록된 계기는 '放朝賀'였다. '放朝賀'란 국왕이 참석하지 않을 때 거행하는 朝賀 예식을 의미하였다.[25] 『고려사』 수록의 조하례 사례는 거의가 특례였는데, '放朝賀' 사례는 고려전기 이래로 조하례 사례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특례였다.[26] 혹시라도 이것이 아니면 '放朝賀' 시에조차 요하의례를 거행한 특례가 기록의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원종 14년(1273) 8월 성절에 요하례가 처음으로 거행되었을 이후로, 요하례는 정조와 성절마다 거행되었을 것이다. 달리 말해, 충렬왕 원년(1275) 1월 정조 이전인 원종 15년(1274) 정월과 원종 15년 8월에도 요하례는 거행되었을 것이다. 다만 실행 사실과 별개로 이들은 특례가 아니어서 기록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 특례적인 충렬왕 원년 1월 정조 사례가 기록상으로 등장하였을 것이다.[27]

2) 원(몽골) 관리의 개경에서의 요하례 거행과 그 영향

요하례 거행의 계기를 직접 말해주는 기록은 없다. 어쩔 수 없이 추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래의 기록을 실마리 삼아 요하례 거행의 계기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다.

> (원종 14년 8월) 왕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聖節을 경하하였다. 다루가치는 자신의 僚屬을 거느리고 오른쪽에 섰다. 上將軍 康允紹 또한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25) 이정란, 「고려 전기 上表 儀禮와 국왕 권위의 顯現」, 『사림』 68, 수선사학회, 2019, 86쪽; 이민기, 「고려시대 元正朝賀儀의 구성과 의미」, 『동방학지』 18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9, 70~74쪽 참조.

26) 최종석, 앞의 논문, 2010 참조.

27) 원종 14년 8월 성절 이후로는 요하례가 정조와 성절에 정례적으로 거행되었을 것이다. 최종석, 앞의 논문, 2010, 239~242쪽 참조.

胡服 차림으로 곧장 들어왔는데, 스스로 客使를 모방하여 왕을 보고도 절하지 않았다. 왕이 분노하였으나 제어할 수가 없었다.[28]

앞서도 언급한 바 있는 위 기록에 따르면, 원종이 자신의 신하를 이끌고 성절을 경하한 시에 고려에 주재하는 다루가치 또한 자신의 僚屬을 이끌고 요하례에 참여하고 있었다. 관련 기록이 없어 정확한 전후 사정을 알 순 없지만, 고려 군주가 요하례를 거행하기에 고려에 주재하는 다루가치(이를 포함한 몽골 관원)도 이에 동참하였다기보다는, 고려에 주재한 몽골 관원이 자국 군주(황제)의 명절을 맞아 요하례를 거행하려거나 거행해야 한 상황에서 원종이 전례 없이 요하례를 거행해야 했을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건국 이후 이때까지 고려 군주는 사신을 보내 성절 등의 황제 명절을 경하하기는 했어도 황제 명절 시에 요하례를 거행한 적은 전혀 없었던 데서, 갑자기 이때 들어 국왕이 자발적으로 요하례를 거행하였고(거행하려 했고) 이로 인해 고려에 주재하는 다루가치와 그 요속이 이 의례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 반대로 황제 궁궐에서 거행되는 조하례에 참석할 수 없는 처지인 다루가치와 그 요속이 마찬가지 여건에 처한 원 영내의 지방에서와 같이 황제 성절을 맞아 요하례를 거행하려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왕은 원컨, 원치 않건 간에 요하례를 거행해야 했을 것으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때 요속을 거느린 채 성절을 경하하는 다루가치는 원종이 임연에 의해 폐위되었다가 몽골의 힘을 빌려 복위한 후에 다시금 다루가치가 배치된 시기에[29] 활동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로, 구체적으로는 李益을 가리켰을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 활동한 다루가치는 그 이전에 斷續的으로 배치되곤 한 다루가치와 달리 管民的인 성격을 갖고 지방관으로서의 역할도

28) 『고려사절요』 권19, 원종 14년 8월

29) 이 기간은 원종 11년(1270) 5월부터 충렬왕 4년(1278) 9월까지에 해당한다. 이 기간에 7명의 다루가치가 고려에 부임하였다. 고명수, 「고려 주재 다루가치의 置廢경위와 존재양태」, 『지역과 역사』 39, 부경역사연구소, 2016, 52쪽의 〈표 2〉에는 이 기간에 고려에 주재한 다루가치의 인명, 종족, 재임 기간, 직위가 정리되어 있다.

담당하게 되었다고 한다.[30] 이 시기 다루가치의 성격은 유동적이고 모호하여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데서, 지방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나,[31] 최근의 이러한 성과는 적어도 당시 고려에서 활동하는 다루가치가 원(몽골) 영내의 지방에서와 같이 요하례를 거행해야 하거나 거행할 수 있음을[32] 이해하는 데에서만큼은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이렇다고 한다면, 다루가치와 그 요속은 원(몽골)의 지방에서와 같이 고려의 개경에서도 황제 명절을 맞아 요하례를 거행하려 했을 것이고, 고려 국왕은 국내에서 거행되는 황제 명절을 경하하는(경하하고자 하는) 예식을 못 본 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비록 사신을 매개로 해서긴 하나 국왕은 황제의 명절(성절 등)을 맞아 표문을 올리고 경하하는 稱臣의 주체로 존립해 온 터라, 정치외교적 환경이 轉變하여 국내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한 요하례가 거행되는(거행되기로 한) 여건에서 이를 외면하거나 회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다루가치 측이 자신들이 거행하고자 한 요하례에 원종의 참석을 강요했을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요하례를 거행하지 않는 국왕의 행태를 문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 노비제와 관련 있기는 하나, '앞서 至元 8년(1271, 원종12)에 본국의 다루가치 衙門에서 본속과 體例를 고치려고 呈文을 올렸다(昨於至元八年 有本國達魯花赤衙門 欲改本俗體例 呈……)'[33]라고 한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至元 8년에 다루가치가 노비제와 관련하여 원(몽골)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이질적인 고려의 노비제를 개변하고자 한 데서 추정해 볼 수 있듯이, 고려에 주재하는 다루가치가 원(몽골)의 지방에서처럼 고

30) 김보광, 「고려 내 다루가치의 존재 양상과 영향－다루가치를 통한 몽골 지배방식의 경험－」, 『역사와 현실』 99, 한국역사연구회, 2016, 41쪽 참조.

31) 고명수는 김보광과 달리 몽골이 고려 주재 다루가치에게 실제적인 민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고명수, 앞의 논문, 2016, 62~63쪽 참조.

32) 원 지방에 파견된 다루가치가 요하례에 참석하였음은 다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大元聖政國朝典章』 卷28, 禮部1 禮制1 朝賀 守土官行禮班首 條의 大德 元年(1297) 松江府가 받든(奉) 江浙行省의 箚付에는, 松江府가 江浙行省에게 '本府의 達魯花赤萬戶와 松江府達魯花赤가 聖旨와 詔赦를 開讀하며 聖節을 축수하고 元正을 경하하는 때에 거행하는 의례의 班首를 맡아 온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申이 인용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다루가치가 요하례에 참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3) 『고려사』 권31, 세가31 충렬왕 26년 11월

려에서도 요하례가 거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요구 주체 면에서 요하례와 다르긴 하나, 원(몽골) 사신이 원(몽골) 지방 아문에서 행하는 영조례 예식절차를 그대로 고려에 적용하는 통에, 영조례 예식절차가 종래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탈바꿈한 사실은[34] 이러한 사안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요하례의 거행도 유사한 궤적을 밟았을 수 있는 것이다.

요하례 거행 계기의 검토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요하례 거행은 계획과 우발의 산물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발의 산물이었을 것이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황제를 대상으로 한 요하례 거행이 설령 원(몽골)을 기준으로 해서 고려의 제도를 改變하고자 한 다루가치의 압력의 산물이었다고 할 경우라 해도, 고려에서의 요하례 거행은 事前에 마련된 계획의 일환에서 추진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사전 계획하에 진행했더라면, 세트라 할 수 있는 요하례와 배표례를[35] 동시에 시작했을 것이다. 곧 원(몽골) 지방 아문에서 황제 명절을 경하하는 예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에 부합하도록 고려의 예식을 개혁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요하례와 배표례를 함께 도입・시행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요하례 거행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 후인 충렬왕 28년(1302)에 이르러서야 배표례 거행은 이루어졌다.[36] 배표례를 제외한 채 요하례만을 거행한 것은 고려를 대상으로 해서도 황제 명절을 경하하는 예식을 원(몽골)의 지방 아문처럼 운영하겠다고 하는 식의 사전 계획

34) 정동훈, 「고려시대 사신 영접 의례의 변동과 국가 위상」, 『역사와 현실』 98, 한국역사연구회, 2015; 최종석, 「고려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 『민족문화연구』 8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b 참조.

35) 正朝, 聖節 등의 명절을 맞아 황제국에서는 신하들이 황제에게 축하의 표문을 바치고, 명절 당일에는 군신 의례인 朝賀儀禮에 참석하여 황제에게 경하를 표한다. 고려의 使者 역시 군주를 대행하여 황제(국)의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 표문을 올리고 조하의례에도 참석한다.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국내에 머무는 군주가 황제(국)의 명절을 맞아 거행하는 臣禮는 배표례와 요하례였다. 배표례는 고려 군주가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을 작성하여 전달의 임무를 맡은 자국의 사신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행하는 臣禮였다. 최종석, 「고려후기 拜表禮의 창출・존속과 몽골 임팩트」, 『한국문화』 8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a, 160쪽 참조.

36) 『고려사』 권67, 志21 禮9 가례 충렬왕 28년 8월 갑자 "百官備禮儀 送于迎賓館 拜表之禮 始此".

없이, 우발적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요하례 거행이 이루어진 데서였을 것이다. 그러한 우발적 요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배표례를 대상으로 해서는 작용하거나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순 없지만, 고려에 주재하는 다루가치 등의 몽골 관인의 이목에 요하례를 거행하지 않는 국왕의 행보는 포착되어 문제시된 데 비해, 배표례는 그러하지 못한 듯싶다. 다루가치 등의 몽골 관인은 고려에도 요하례를 관철해야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연히 요하례를 거행하지 않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실을 문제로 간주하여[37] 요하례 거행을 관철하였을 것이다.[38]

한편 관계 초창기에 원(몽골)의 사신이 전대 왕조와 달리 고려를 대상으로도 외로 아문에서 거행되는 영조례를 적용하면서도, 그러한 개변의 배경과 이유에 대한 개진 없이－가령 前例에 의지한다든가, 경전・古制 등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식의 사전 정지 작업 없이－다소 돌발적으로 이 사안을 추진한 것은[39] 이와 비근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사신(원 조정)은 고려의 위상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고려를 대상으로 해서도 외로 아문에서 거행되는 영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는, 사전에 특정한 해답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 이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나온 임기응변에 가까운 조치였을 것이다. 이외에도 원(몽골) 측의 고려를 대상으로 한 제후국제로의 격하 요구가 온전한 제후국 체제의 구현과 같은 사전 계획이 부재한 채 다소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제후국제 운용은 매우 불완전하고 불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한[40]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요하례 거행이 사전 계획에 없던 우발적 성격의

37) 고려가 요하례를 거행하지 않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은 아니었을 것이다. 문제로 간주되는 것 자체도 우발적 성격의 일이었을 것이다.

38) 요하례 거행 계기에 있어, 다루가치와 그 요속은 원(몽골)의 지방에서와 같이 고려의 개경에서도 황제 명절을 맞아 요하례를 거행하려 했을 것이고 고려 국왕은 국내에서 거행되는 황제 명절을 경하하는(경하하고자 하는) 예식을 외면할 수 없어 신하들을 통솔한 채 요하례를 거행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할 할 때도, 이러한 식의 요하례 거행 역시 사전 계획의 산물이라 보기는 어렵다. 우발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39) 최종석, 앞의 논문, 2019b, 163~164쪽 참조.

40) 최종석, 「중화 보편, 딜레마, 창의의 메커니즘－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 성격의 재검토－」, 『조선시대 예교 담론과 예제 질서』, 소명출판, 2016; 최종석, 「고려 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

일이었다고 보더라도, 당시에 그러한 성격의 일은 예외적이거나 돌발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3. 요하례 예식 구현 양상의 변화 추이

1) 국왕과 원(몽골) 관원의 병렬적 예식 거행

관련 기록이 전무하다시피 하기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요하례 예식 구현의 변화상 내지 수렴 양상을 충실히 검토하려는 시도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드문드문 노정되는, 요하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변화 파편을 발굴·주목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음미하는 작업을 위주로 해서 요하례 예식 구현의 변화상을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요하례를 시행하게 되고 나서의 의례 양상은 다음 기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 (원종 14년 8월) 王은 일찍이 聖節을 경하하였다. 다루가치는 자신의 僚屬을 거느리고 오른쪽에 섰다. 內豎 上將軍 康允紹는 다루가치에게 아부하여 그의 무리를 이끌고 胡服 차림으로 곧장 들어왔는데, 스스로 客使를 모방하여 왕을 보고도 절하지 않았다. 왕이 절하자 일시에 胡拜를 하였다. 왕은 노하여도 제어할 수 없었고, 有司도 감히 비난하지 못하였으나, 김구가 강윤소를 탄핵하는데 힘을 다하였다. 다루가치가 노하며 이르기를, "강윤소는 먼저 머리를 깎았고 상국의 예를 따랐는데, 도리어 탄핵한다는 말이오?"라고 하며 김구를 위험에 빠트리려 하였다.[41]

의식'의 탄생과 내향화-조선적 자기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민족문화연구』 7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참조.

41) 『고려사』 권106, 열전19 諸臣 金坵 "王嘗賀聖節 達魯花赤率其屬 立於右 內豎上將軍康允紹 阿附達魯花赤 亦率其黨 胡服直入 自比客使 見王不拜 及王拜 一時作胡拜 王怒 不能制 有司亦莫敢詰 坵劾之甚力 達魯花赤怒曰 允紹先開剃 遵上國之禮 而反劾耶 將危之".

위 기록은 원종 14년(1273) 8월 성절 시에 고려 군주(와 그 신하들)와 다루가치 등의 원(몽골) 관원이 함께 참여하는 식으로 거행되었을 요하례가 고려 군주(원종)를 정점으로 해서 거행되지 않고 고려 군주와 그가 이끄는 신료들을 한 그룹으로, 다루가치 등의 원(몽골) 관원들을 또 다른 그룹으로 하여 거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하였을 사실은 (정)다루가치였을 李益이 왕과 그 통솔 하의 群臣과는 별도로 그 요속을 이끌고 국왕이 이끄는 그룹의 우측에 자리한 점에서 엿볼 수 있다. 국왕을 정점으로 한 반열 가운데 다루가치와 그 요속이 우측에 자리했을 수도 있으나, 上將軍 康允紹가 보인 행보는 그렇게 보기 어려움을 웅변한다. 剃髮을 하고 호복을 입은 강윤소는 스스로를 客使로 간주하여 왕을 보고도 절하지 않고 다루가치 측으로 들어간 듯싶다. 국왕과 그 신하들은 국왕의 신하인데 그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강윤소의 행위에 분노하였지만, 전후 문맥으로 보아 몽골 관인인 다루가치와 그 요속이 국왕을 상대로 강윤소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강윤소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몽골 관인이 아닌 강윤소가 몽골 관인(객사) 행세를 하면서 고려 신하가 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것이었다.[42] 또한, 국왕이 먼저 배례를 하고 다루가치(그 요속)는 胡拜를 하는 데서 엿볼 수 있듯이, 다루가치(그 요속)와 국왕의 관계는 군신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상하 관계조차 아니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시에 국왕과 그 통솔 하의 群臣 및 (정)다루가치와 그 요속은 병렬한 채 같은 공간에서, 구체적으로는 궁궐에서[43] 함께 요하례를 거행하였을 것이다. 원(몽골) 지방 아문의 요하례로 치자면, 국왕과 (정)다루가치는 각 그룹의 班首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충렬왕 즉위일의 다음 기록 또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

42) 고명수는 강윤소가 다루가치의 지위가 국왕보다 높다는 인식·관단 속에서 다루가치 李益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고명수, 앞의 논문, 2016, 56~57쪽.

43) 구와노 에이지(桑野榮治)는 충렬왕 1년 1월 정조 시의 요하례를 대상으로 하기는 했지만, 당시 요하례가 궁궐 내 정전, 구체적으로는 康安殿에서 거행되었다고 논증하였다. 桑野榮治, 앞의 논문, 2004, 69쪽 참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충렬왕 즉위년 8월 기사) 왕이 조서를 받은 뒤에 경령전에 배알하고 康安殿으로 돌아와 黃袍를 입고 즉위하였다. 여러 신하들의 하례를 받고 나서 詔使를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詔使는 왕이 駙馬였기에 왕을 南面하게 하고, 자신은 동향으로 앉고 다루가치는 서향으로 앉게 하였다. 왕이 술을 따라주니 조사는 절하고 받았고 술을 마신 뒤에 다시 절하였다. 다루가치가 서서 술을 마시고 절하지 않자 조사가 말하기를, "왕은 天子의 駙馬이시다. 그대가 어찌 감히 이같이 하는가? 우리가 돌아가서 황제께 상주하면 그대의 죄가 없겠는가?"라고 하였다. 다루가치가 대답하기를, "공주가 계시지 않고, 또한 이것은 선왕 때부터의 禮입니다."라고 하였다.[44]

책봉 조서를 받는 예식이 끝난 후에 거행된 연회에서 충렬왕이 술을 따라주자 절하면서 이를 받고 술을 마신 뒤 다시 절을 한 詔使와 달리, 다루가치는 서서 술을 마시고 절을 하지 않았는데, 다루가치는 이것이 先王, 곧 원종 시의 禮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원종대 국왕과 다루가치의 관계는 군신 관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상하 관계조차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원종 14년 성절 요하례 시에 강윤소가 국왕에 대한 신례를 회피하면서 합류한 다루가치 그룹은 국왕을 정점으로 한 반열 가운데 일부로 자리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다. 당시에 다루가치 그룹은 국왕 측과 함께 하례를 거행하기는 했어도 병렬한 채로였을 것이다.[45] 이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44)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즉위년 8월 기사 "王受詔畢 謁景靈殿 還御康安殿 服黃袍卽位 受群臣朝賀 仍宴詔使 詔使以王駙馬 推王南面 詔使東向 達魯花赤西嚮坐 王行酒 詔使拜受 飮訖又拜 達魯花赤立飮不拜 詔使曰 王天子之駙馬也 老子何敢如是 吾等還奏 汝得無罪耶 答曰 公主不在 且此先王時禮耳".

45) 통상 다루가치가 관할 구역의 실제 통치자보다 높은 위상인 점에 비추어, 다루가치가 국왕인 원종보다 상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참고가 된다(고명수, 앞의 논문, 2016, 54~57쪽). 당시 다루가치가 원종보다 상위에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나, 적어도 원종 휘하에서 요하례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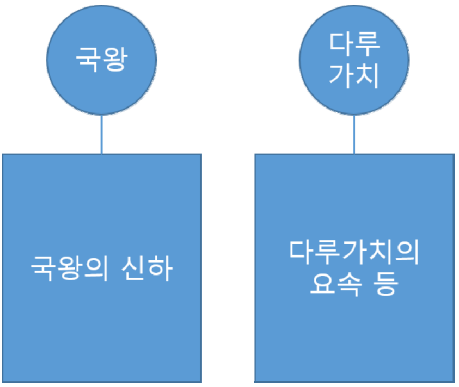

한편 위에서 언급한 충렬왕 즉위일 기록은 대칸 쿠빌라이의 부마인 충렬왕의 즉위 후로도 요하례 거행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을 시사한다. 다루가치는 원종 시의 禮에 따라 충렬왕을 상대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루가치는 제국대장공주의 합석 시에 충렬왕을 황실의 부마로 대접하였을 것이지만, 요하례에는 제국대장공주가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부마라는 변수는 요하례의 거행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수조하 의례의 일환인지 예식 종료 후에 이루어진 이벤트인지 불명확하긴 하나, 충렬왕 2년(1276) 정월 초하루에 元帥 忻都와 다루가치 石抹天衢가 충렬왕에게 말을 바친 일이 있다(獻馬).[46] 元帥 忻都와 다루가치 石抹天衢의 이러한 행위는 충렬왕이 부마인 사실이 작용하였을 것이다.[47]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요하례 의식이 충렬왕의 즉위를 계기로 충렬왕을 정점으로 하여 거행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獻馬 사례로 보아, 충렬왕은 지위상으로 다루가치와 몽골 元帥에 비해 높았을 수 있으나, 이들을 통할·제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소위 '친조 외교'의 성과, 즉 충렬왕 4년(1278) 충렬왕이 親朝하여 쿠빌라이를 면대하여 현안을 논의하여 거둔 소기

46)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2년 정월 정묘 "群臣賀正于王 用幣 命賜內帑銀紵 支其費 歲以爲常 元帥忻都達魯花赤石抹天衢 各獻馬".
47) 고명수, 앞의 논문, 2016, 58~59쪽 참조.

의 성과에 고려 내 주둔했던 元軍과 다루가치의 철수가 포함된 사실은,[48] 충렬왕의 이들에 대한 통제가 세조 쿠빌라이에 의지해야 가능했음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결국, 충렬왕이 즉위한 이후로도 원종대와 마찬가지로 국왕 측과 다루가치 등의 몽골 관원이 병렬한 채 요하례를 거행하는 양상은 지속되었을 것이다.[49]

2) 다루가치 철수와 전기 정동행성 설치 이후 국왕을 정점으로 한 요하례 거행

앞서 언급했듯이, 충렬왕 4년(1278) 친조 외교의 성과로 인해 다루가치와 元軍이 철수하게 되었다.[50] 元軍의 철수는 忻都, 洪茶丘 등의 元軍 지휘관의

---

48)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4년 7월 무술. 친조 외교에 관해서는 김혜원, 「忠烈王의 入元行績의 性格」, 『高麗史의 諸問題』(邊太燮 編), 삼영사, 1985; 이익주, 「高麗·元關係의 構造와 高麗後期政治體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참조.

49) 고려에 주둔하는 동정원수부의 지휘관 등의 원군 장수들이 요하례에 참여했는지는 기록이 없어 명확히 알 순 없다. 다만 참여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은 있다. 아래 기록이 그것이다.

>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신년을 경하하였다(群臣賀正于王). 소용되는 비용은 內帑의 은과 저포를 하사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고 매년 상례로 삼도록 하였다. 원수 忻都와 다루가치 石抹天衢는 각각 말을 바쳤다(『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2년 정월 정묘).

이 '受朝賀' 사례는 특례였기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인데, '受朝賀' 예식의 거행 자체보다는 受朝賀 예식의 비용 조달 방식의 변경 또는 元帥 忻都와 다루가치 石抹天衢의 충렬왕에의 獻馬를 계기로 하여 기록되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受朝賀' 예식에 앞서 요하례가 거행되었을 것이기에, 충렬왕 2년(1276) 정월 초하루에도 요하례는 거행되었을 것이다. 다만 특례가 아니다 보니 기록으로 포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 기록을 통해 원수 忻都가 다루가치 石抹天衢와 함께 요하례에 참여하였을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원수 忻都는 다루가치 石抹天衢와 함께 요하례에 참여하였을 것이기에, 요하례에 뒤이어 바로 거행된 '受朝賀'의 종료 후에 다루가치와 함께 충렬왕에게 말을 바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大元聖政國朝典章』 卷28, 禮部1 禮制1 朝賀 軍官慶賀事理의 元貞 2년(1296) 10월 湖廣行省이 받은(准) 樞密院 咨文에 의하면, 원 영내의 지방에 鎭守하는 만호, 천호, 백호 등은 요하례를 거행하였다. 고려에 진수하는 군관도 명절에 개경에 머무는 등의 여건이 허락되는 이들에 한해 요하례에 참여하여 황제를 대상으로 멀리서나마 경하를 하였을 것이다.

한편 요하례에 참여한 원군의 장수는 다루가치처럼 원의 官人으로서 국왕을 정점으로 한 예식 반열에 위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50) 충렬왕 4년(1278) 9월 副達魯花赤 石抹天衢와 達魯花赤經歷 張國綱의 소환으로 고려에 주재해 온 몽골의 다루가치는 철폐되었다.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4년 9월 병술 "達魯花赤經歷張國綱 還元 謁王于道曰 前者秩滿當還 王報上司留之 于今七年 今達魯花赤元帥及官軍 皆還 一國之福也

철수도 수반하는 것이었다. 다루가치와 元軍 지휘관은 요하례 예식에 참석해서는 원의 官人으로서 국왕을 정점으로 한 예식 반열에 자리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다루가치와 元軍의 철수라는 변화는, 요하례의 측면에서 보자면, 국왕을 정점으로 한 예식 반열에서 벗어나 있던 존재들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루가치와 元軍이 철수하게 되고 나서 요하례는 국왕과 그 예하의 신하들에 의해 거행되었을 것이다. 국왕이 예식 반열의 정점의 위상을 독점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철수가 단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충렬왕 6년(1280) 8월에 2차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51] 정동행성의 설치는 원의 관원이 행성관으로 임명되어 고려에 파견되어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기에, 최근에 자리 잡은, 국왕을 정점으로 한 요하례 예식 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했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으나, 충렬왕을 정점으로 한 요하례 구현에는 별다른 변수로 작용하지 못한 듯싶다. 충렬왕이 정동행성의 수장인 승상으로 임명되고[52], 고려에 파견되어 온 원의 관원은 승상인 충렬왕의 屬官인 행성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철수 이전에 동정도원수로 충렬왕의 하위에 있지 않았던 흔도와 홍차구가[53] 정동행성 우승에 임명되었다[54]. 이들은 충렬왕의 屬官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여건으로 말미암아 당시 요하례는 이전과 달리 고려국왕이자 정동행성 승상인 충렬왕을 정점으로 해서 거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충렬왕은 고려의 群臣과는 상하 군신 관계를 이루고 있었고, 행성관원과도 군신관계는 아니어도 상하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정동행성 승상의 측면에서 보자면, 충렬왕은 행성 내에서 班首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國綱處事清平 多所裨益".

51) 이에 관해서는 고병익, 「麗代征東行省의 研究」 上·下, 『역사학보』 14·19, 역사학회, 1961·1962; 北村秀人, 「高麗に於ける征東行省について」, 『朝鮮學報』 32, 天理大學朝鮮學會, 1964; 장동익, 「前期征東行省의 置廢에 대한 檢討」, 『대구사학』 32, 대구사학회, 1987 참조.

52) 『元史』 卷11, 本紀11 世祖8 至元 17년 12월 癸酉.

53) 장동익은 동정도원수인 흔도와 홍차구가 충렬왕의 상위에 혹은 그와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았다. 장동익, 앞의 논문, 1987, 22쪽.

54) 『元史』 卷11, 本紀11 世祖8 至元 17년 8월 戊戌.

이러하였기에, 충렬왕을 정점으로 하여 그 하위에 고려의 군신과 행성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요하례가 거행되었을 것이다[55]

정동행성의 설치 후 요하례 거행 양상은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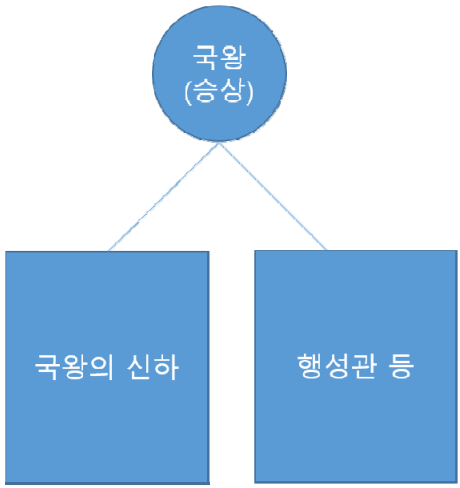

그런데 충렬왕 6년(1280) 8월에 설치된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이 실패한 후인 충렬왕 8년(1282) 1월에 폐지되었다(1차 정동행성 폐지). 정동행성이 폐지되면서 요하례는 충렬왕과 그의 신하들만을 구성원으로 하여 거행되었을 것이다. 이후로도 軍前行省적 성격을 띤 정동행성(전기 정동행성)이 두 차례 더 설치되었기는 하나, 요하례 거행 양상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2차, 3차 정동행성은[57] 1차 정동행성과 달리 고려(개경)가 아닌 원의 강남에 설치되었고, 행성관도 강남의 무장을 주축으로 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이다.[58]

55) 만약 이들 행성관이 명절을 맞아 요하례에 참석하였다고 가정할 때 요하례 양상은 이렇게 거행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참여는 안정적이지 못했을 게 일본 원정에 참가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들 가운데 여건이 되는 者에 한해 요하례에 참석하였을 것이다.

56) 이 그림은 행성관이 참여하였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57) 제 2차 정동행성은 충렬왕 9년(1283) 1월에 설치되어 충렬왕 10년(1284) 5월에 폐지되었고, 제 3차 정동행성은 충렬왕 11년(1285) 10월에 설치되어 충렬왕 12년(1286) 1월 경에 폐지되었다.

58) 제 2차, 3차 정동행성에 관해서는 장동익, 앞의 논문, 1987 참조.

2차, 3차 정동행성은 고려 조정에서 거행되는 요하례에 사실상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3) 후기 정동행성의 설치 후 요하례 거행 장소의 변화

충렬왕 13년(1287)에 후기 정동행성으로도 불리는 정동행성이 復設된 후 눈에 띄는 변화는 이전과 달리 정동행성이 독자적으로 進賀使를 파견한 사실이다. 이 변화를 실마리 삼아 요하례의 변화상을 추정해 보려 한다.

후기 정동행성으로도 불리는 충렬왕 13년 이후로의 정동행성은 충렬왕 6년(1280) 이후 원(몽골)의 일본원정 수행을 위한 기관(軍前行省)으로서 斷續的으로 존재하곤 한 기왕의 정동행성과는 이질적이었다. 후기 정동행성은 기본적으로 황제(카안)를 정점으로 하는 지방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었다.[59] 충렬왕은 제 1, 2차 (전기)정동행성의 丞相職에 임명되어서인지, 충렬왕 13년(1287) 5월에 복설된 정동행성의 行尙書省平章政事에 임명되었고,[60] 이듬해 2월에 行征東尙書省左丞相으로 改授되었다.[61] 이 이후로 고려국왕은 정동행성의 승상을 당연직으로 겸직하였다. 충렬왕과 그 이후의 고려국왕은 복설된 정동행성의 승상을 겸하게 되면서, 충렬왕 6년(1280)에 정동행성 승상이 될 당시에는 전혀 예상 내지 의도하지 않았을 지방통치 기관의 장관이라는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후기 정동행성의 설치라는 변화와 관련하여 여기서 주목하는 사실은 후기 정동행성의 설치와 맞물려 정동행성이 고려(국가)와 별도로 몽골(황제)에 사신(진하사)을 보낸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후기 정동행성의 설치와 맞물려 정동행성은 충렬왕 14년(1288)부터 충렬왕 32년(1306)까지 고려(국가)와 별도로 명절을 경하하기 위해 원(황제)에 사신을 보냈다. 『大元聖政國朝典章』에 따르면, 元日, 聖節 등의 명절에 5품 이상의 長官은 모두 慶賀의 표문을 올려

59) 北村秀人, 앞의 논문, 1964; 장동익, 「征東行省의 硏究」, 『동방학지』 6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0 참조.
60) 『元史』 卷14, 本紀14 世祖11 至元 24년 5월 壬寅.
61) 『元史』 卷15, 本紀15 世祖12 至元 25년 2월 己卯.

야 하는데,[62] 정동행성 승상은 표문을 올리는 5품 이상 관부의 장관에 해당하였다. 충렬왕 14년(1288)부터 충렬왕 32년(1306)까지 정동행성이 고려(국가)의 進賀使 파견과 별도로 진하사를 파견한 것은[63]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64]

이 기간에는 고려(국가)와 정동행성이 제각기 사신(사자)을 파견하여 몽골(황제)에게 표문을 바치고, 이들 두 사신(사자)은 명절 당일에 거행되는 조하례에 고려국왕과 정동행성 승상을 대행해서 참석하였을 것이다. 이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고려가 외국(속국)이면서 동시에 원(몽골) 지방통치기관의 관할 지역이기도 한 데서 기인한 일이었다.

정동행성이 고려(국가)와 별도로 몽골(황제)에 사신을 보낸 것은 후기 정동행성이 설치되고 나서 여타 행성과 마찬가지의 위상과 행보에서의 일이었을 것인데, 같은 이유에서 정동행성에서는 여타 행성과 마찬가지로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를 거행해야 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진하사에게 표문을 건네는 과정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배표례를 거행하고, 명절 당일에는 요하례를 거행해야 했을 것이다. 곧 정동행성의 승상은 행성관원을 이끌고 황제를 대상으로 하여 배표례와 요하례를 거행해야 했을 것이다. 고려(국가)와 별개로 말이다.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후기 정동행성의 설치 후 정동행성은 고려(국가)와 구분되는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의 독자적 주체로 부상하였고, 이로 인해 고려(국가)와 정동행성은 별도로 사신(사자)을 보냈으며, 고려(국가)는 궁궐에서, 정동행성은 해당 건물에서 배표례와 요하례를 따로 거행하게 되었을 것이다.[65] 그런데 요하례의 경우 현실은 논리의 세계와 달랐다. 정조와 성절시에 정동행성과 고려(국가)가 각각 궁궐과 행성이라는 상이한 공간에서 요

62) 『大元聖政國朝典章』 卷28, 禮部1 禮制1 進表 表章五品官進賀.
63) 정동행성 차원의 진하사 파견에 관해서는 이명미,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혜안, 2016, 128~129쪽 참조.
64) 최종석, 앞의 논문, 2019a, 172~173쪽.
65) 고려(국가) 차원의 배표례는 충렬왕 32년(1306)에야 시작되었다. 『고려사』 권67, 志21 禮9 가례 충렬왕 28년 8월 갑자 "百官備禮儀 送于迎賓館 拜表之禮 始此".

하례를 따로 거행하는 것은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한 인물이 고려국왕이면서 정동행성 승상인 데서 기인한 곤란함이었다.

요하례는 정조와 성절의 당일 아침에 황제의 궁궐에서 거행되는 조하례와 同期化되어 동시에 거행되야 하는 것인 데서, 만약 고려(국가)와 정동행성 차원의 요하례가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거행되어야 한다면, 별도로 거행되면서도 같은 시각에 거행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현실적인 애로 상황이 발생한다. 각각의 요하례의 班首에 해당하는 존재(고려국왕과 정동행성 승상)가 동일인물이어서, 별도의 공간에서 동시에 요하례를 거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충렬왕은 둘 중의 한 군데에의 참석을 포기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곤란함은 배표례에는 없는 요하례에 고유한 것이었다. 배표례는 명절 당일이 아니라 그에 앞서 행하는 예식이다 보니 고려(국가)와 정동행성 차원의 배표례를 거행 날짜를 달리한 채 거행할 수 있었고, 실제로 날짜를 달리해서 거행하였다. 고려(국가)와 정동행성이 사신에게 표문을 건네는 날짜가 상이한 데서[66] 이 점을 알 수 있다. 요하례도 임기응변을 발휘하여 충렬왕이 시차를 두고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행할 수는 있었을 것이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한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정동행성(승상)은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 면에서 고려(국가)와 구분되는 의례상의 독자성을 확보했어도, 요하례만은 어쩔 수 없이 고려(국가)와 구분되는 공간에서 별도로 거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요하례는 고려국왕이자 정동행성 승상인 충렬왕을 정점으로 해서 고려 신료와 행성관이 함께 참여하는 식으로 치러졌을 것이다.

이렇다고 하면, 후기 정동행성의 설치와 맞물려 정동행성이 고려(국가)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를 거행하게 된 이후로도, 요하례만은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점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1차 (전기)정동

66)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충렬왕 29년(1303) 7월 신사일에 정동행성은 성절을 경하하는 사신을 보냈고(『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29년 7월 신사), 이보다 뒤늦은 동년 8월 기축일에 고려(국가)는 성절을 경하하는 사신을 보냈다(『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29년 8월 기축).

행성의 설치 시기와 비교할 때 그러하다. 하지만 변화가 없지만은 않았다. 우선, 행성관의 요하례 예식에의 참여가 분명한 상수가 된 점은 변화라 할 수 있다. 1차 (전기)정동행성 설치 시기에조차 행성관의 요하례 참여가 불분명 내지 불안정하였을 사실을 감안할 때 그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례 장소 면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곧 정조 요하례는 궁궐에서, 성절 요하례는 행성에서 거행되는 식으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별도로 예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합동으로 진행하는 대신, 성절 요하례 시에는 고려(국가)가 양보하여 행성에서 예식을 거행하였을 것이다-정조 요하례 시에는 정동행성이 양보하여 궁궐에서 거행하였을 것-. 정조와 성절 가운데 하루씩 각자의 거행 장소에서 예식을 거행한 셈이다.

이런 식의 결정에는 성절에는 요하례만을 거행하면 되는 데 비해, 정조에는 요하례 외에도 국왕이 자신의 신하로부터 경하를 받는 수조하 의례를 거행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만약 정조 요하례를 행성에서 거행하였다면, 요하례를 마친 후 수조하 의례를 거행하기 위해 번거롭게 궁궐로 돌아와야 했을 것이다. 국왕이 군주의 위상에서 신하들로부터 경하를 받는 예식을 행성에서 거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후술하듯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조는 궁궐에서 해야 했고, 이와 맞물려 성절 요하례는 행성에서 거행했을 것이다.

성절 요하례가 행성에서 거행되었음은 다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 (공민왕 원년 4월) 왕이 장차 行省에 행차하여 聖節을 경하하려 하는데, 院使 奇轅이 말을 나란히 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니, 왕이 衛士에게 명하여 앞뒤로 나누어 호위하도록 하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67]

이것은 『고려사절요』에 기재된 것으로, 『고려사』 奇轍 열전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성절 요하례를 거행하기 위해 국왕이 행성으로

67) 『고려사절요』 26, 공민왕 원년 4월 "王將幸行省賀聖節 院使奇轅欲竝馬而語 王命衛士分衛前後 使不得近".

행차한 기록이 노출된 것은 이 사실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행차 과정에서 있은 奇轅의 무엄한 행동을 특기해야 해서였을 것이다. 기록의 계기를 고려할 때, 성절 시에 국왕이 행성에서 성절을 경하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못 되는, 곧 통상적인 모습이었다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절 요하례는 행성에서 거행되어 오고 있었고, 이는 특기할 만한 게 못 되어 기록으로 남지 않았는데, 이 와중에 奇轅의 불손한 행위로 인해 성절 요하례를 행성에서 거행하는 사실이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68]

한편 다음 기록은 정조에는 요하례가 행성이 아니라 궁궐에서 일반적으로 거행되었음을 말해준다.

- (충목왕 원년 1월 병술) 왕이 百官을 거느리고 行省에서 正朝를 경하하였다.[69]
- (공민왕 원년 1월 병오) 왕이 百官을 거느리고 行省에서 正朝를 경하하고 궁궐로 돌아와 잔치를 베풀었다.[70]

두 기록은 공통적으로 행성에서 정조 요하례를 거행하는 사례이다. 그런데 이들 사례는 역으로 정조 시에 요하례가 궁궐에서 거행되었을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특례를 위주로 한 기록 방식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기록 방식을 감안할 때, 행성에서 정조 요하례를 거행하는 방식은 예외적이고 특례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정조 요하례는 궁궐에서 거행되어 기록으로 남진 않다가, 예외적으로 정조 요하례를 행성에서 거행한 특례가 기록상으로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71] 흥미롭게도 이들 사례는 공통적으로 즉위 후 맞이하는 첫 번째 정조 조하례에 해당하였다. 즉위 후 맞이하는 첫 번째 정조 시 요하

68) 최종석, 앞의 논문, 2010, 250쪽.
69) 『고려사』 37, 세가37 충목왕 원년 1월 병술 "王率百官 賀正于行省".
70) 『고려사』 38, 세가38 공민왕 원년 1월 병오 "王率百官 賀正于行省 還宮設宴".
71) 이들 가운데 공민왕 기사는 행성에서 요하례를 거행하다 보니 환궁하여 잔치를 베풀어야 하는 모습을 전한다. 행성에서 요하례를 거행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궁하여 수조하 의례를 거행하고 이후 궁궐에서 잔치를 베풀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수조하 의례를 생략한 듯싶다.

례를 예외적으로 행성에서 거행하여, 새로 즉위한 고려 국왕이 정동행성의 승상이기도 한 면모를 의례를 활용하여 구현하고자 한 듯싶다.[72]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정조 요하례는 궁궐에서, 성절 요하례는 행성에서 거행한 지이다. 이 점은 명확하지 않다. 기록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으로의 변화에 관한 정보가 특기할만한 사실은 못 되는 데서였을 것이다. 추정을 해 보자면, 이러한 변화는 그것이 요구되거나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변화된 방식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요구되거나 그 여건이 마련된 시점으로 가장 타당하고도 적절한 때는 후기 정동행성이 설치되어 별도로 행성 차원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의례를 거행하게 된 때라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현실 여건상 정동행성은 별도로 요하례를 거행할 수 없었다. 대신에 고려(국가)와 정동행성이 함께 요하례를 거행하면서도 행성이 독자적으로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를 수행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조는 궁궐에서, 성절은 행성에서 요하례를 거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4) 충렬왕 25년 무렵 元制(禮)를 기준으로 한 요하례 예식절차의 개변

정동행성에 平章政事, 右丞 등의 재상직이 증치되고 활리길사 등의 원의 관리가 정동행성의 재상으로 파견된 시기에,[73] 요하례 예식절차의 변개가 단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다음 기록은 이에 관한 것이다.

> • (충렬왕 25년 12월) 行省 관료 및 백관이 奉恩寺에서 3일 賀正儀를 연습하였는데, 習儀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74]

---

72) 최종석, 앞의 논문, 2010, 250~251쪽. 기타무라 히데토(北村秀人)는 충렬왕 25년(1299)부터는 요하례가 정조 시에도 행성에서 거행되었다고 보았다(北村秀人, 앞의 논문, 1964, 39~40쪽). 이는 특례인, 정조 시 요하례의 행성에서의 거행을 상례로 본 데서 비롯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73) 고병익, 「麗代征東行省의 硏究」 上·下, 『역사학보』 14·19, 역사학회, 1961·1962; 北村秀人, 앞의 논문, 1964; 장동익, 앞의 논문, 1987 참조.

• (충렬왕 25년 12월) 平章 闊里吉思가 行省 관료 및 백관과 함께 奉恩寺에서 3일 賀正儀를 연습하였는데, 習儀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75]

양자는 거의 동일한데 후자가 좀 더 상세하긴 하다. 위 기록에 따르면, 충렬왕 25년 12월에 賀正儀 習儀(肄儀)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賀正儀 習儀에는 평장정사를 포함한 行省官과 백관이 참여하고 있었다. 行省官과 백관은 賀正儀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었기에, 함께 예행연습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때의 賀正儀는 국왕이 아니라 황제의 정조를 경하하는 예식이었음이 분명하다.[76] 정동행성 승상과 行省官 사이에는 군신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에, 고려국왕을 대상으로 한 수조하 의례에는 行省官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타 행성에서도 승상이 여타 행성관으로부터 경하를 받는 수조하 의례는 거행되지 않았다. 요컨대, 忠烈王 25년 12월에는 곧 있을 정조 요하례를 위한 예행연습을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다.

습의는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정조뿐만 아니라 성절 시에도 꾸준히 시행되었을 것이다. 특례를 위주로 한 기록 방식을 통해 볼 때 그러하다. 습의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실만을 기록하고 그 이후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관례적으로 행한 습의 사실은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조 이외에 성절 시에도 습의를 시행하였을 것은 후술할 원 사례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황제를 대상으로 한) 하정의(요하례)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때 와서야 習儀를 행한 사실이다. 그동안 습의 없이 요하례를 거행하다가 이때 습의를 도입한 것인데, 습의의 도입・실행은 元朝禮 수용의 차원에서였을 것이다. 원에서는 다음의 元正受朝儀 의주에서 보듯 애초부터 습의는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

74) 『고려사』 권67, 지21 禮9 가례 王太子節日受宮官賀竝會儀 충렬왕 25년 12월 "行省官寮及百官 肄賀正儀於奉恩寺三日 肄儀始此".

75) 『고려사절요』 권22, 충렬왕 25년 12월 "平章闊里吉思與行省官僚及百官 肄賀正儀於奉恩寺三日 肄儀始此".

76) 桑野榮治, 앞의 논문, 2004, 68쪽.

期日 3일 전에 聖壽萬安寺 혹은 大興教寺에서 의식을 연습한다.[77]

원 조정에서 거행되는 元正受朝儀, 곧 정조 시 조하례의 경우, 예식 3일 전에 聖壽萬安寺 혹은 大興教寺에서 습의가 이루어져야 했다. 습의는 성절 시에도 이루어졌을 것인데, 예식절차 면에서 天壽聖節受朝儀는 元正受朝儀와 동일하였기 때문이다.[78] 원 조정에서 거행되는 조하례 예식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동된, 원 지방 아문의 요하례에서도 본식에 앞서 사원에서 습의가 행해졌다.[79]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충렬왕 25년 12월에 皇帝와 皇后의 影堂이 있는 진전사원인 聖壽萬安寺・大興教寺[80]와 같은 성격의 고려 봉은사에서[81] 정조 요하례 3일 전에 예식을 연습한 것은 원에서 거행되는 요하례(조하례)와 同調化하는 조치였다고 하겠다.

원제 수용의 차원에서 요하례의 습의를 거행한 것은 시점을 따져보았을 때 후기 정동행성 설치 직후의 일은 아니었다. 이는 정동행성이 독자적 의례 수행의 주체로 부상한 것과 무관한 일인 것이다. 명시된 기록이 없이, 습의 시행을 도입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진 않다. 다만 『고려사절요』의 기록에서 활리길사(고르기스)가 부각된 사실로 미루어 습의 도입이 활리길사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82] 후대의 기록이긴 하나 다음 기록은 이 점을 방증해 준다.

(공양왕 3년 10월) 郎舍가 상소하기를……정미년에 元朝가 闊里吉思 平章을 파견하여 本朝의 儀制를 모두 革正하였다.[83]

---

77) 『元史』 卷67, 志18 禮樂1 元正受朝儀 "前期三日 習儀于聖壽萬安寺或大興教寺".
78) 『元史』 卷67, 禮樂1 天壽聖節受朝儀.
79) 許正弘, 앞의 논문, 2013年 6月, 130~131쪽.
80) 『元史』 卷75, 祭祀志4 耐御殿.
81) 봉은사는 태조의 眞影을 봉안한 진전사원이다.
82) 구와노 에이지(桑野榮治) 또한 활리길사의 지도 하에 賀正儀의 예행연습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桑野榮治, 앞의 논문, 2004, 68쪽.
83) 『고려사』 권85, 지39 형법2 소송 공양왕 3년 10월 "恭讓王三年十月 郎舍上疏曰……歲在丁未 元朝遣闊里吉思平章 本朝儀制 一皆革正".

이에 따르면, 정미년(1307년, 충렬왕 33년)에 '闊里吉思平章'은 고려 儀制를 革正하였다고 한다. 활리길사가 평장정사로 고려에서 활동한 시기는 충렬왕 25년(1299)부터 충렬왕 27년(1301)까지인 데서, 정미년은 오기이거나 이 언급이 후대인 恭讓王대 郎舍의 上疏 가운데 나온 점을 감안할 때 기억의 오류였을 것이다. 활리길사가 다양한 방면에 걸쳐 고려사회의 改變을 시도했음을[84] 고려할 때, 비록 연도(간지)는 부정확할지라도 그가 주도하여 儀制를 革正한 사실만은 믿을만할 것이다. 儀制 革正은 개변 시도들 가운데 충분히 하나였을 수 있는 것이다.

고려 儀制의 실체가 불명확하긴 해도, 고려 儀制 革正은, 활리길사가 주도한 개혁의 성격이 원을 기준으로 고려의 관례·제도를 개변하고자 한 것임에서,[85] 원과 상이하였을 고려 儀制를 원의 해당 儀制－아쉽게도 해당 의제의 실체가 명확하진 않지만－에 同調하고자 한 조치였을 것이다.[86] 요하례 습의의 도입·실행도 이 일환에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활리길사가 활동한 시기에 이루어졌을 요하례의 革正이 단지 습의의 도입에 그쳤을지는 의문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습의를 도입한 때 혹은 그 무렵에 원제에 맞추어 이와 상이한 고려의 요하례 예식절차를 변개한 듯싶다. 습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원 8년(1271, 원종 12)에 제정된 元正儀, 天壽聖節受朝儀에 적시되어 있고, 원(몽골) 지방 아문의 요하례에서도 일찍부터 행했을 것임에도, 고려에서는 충렬왕 25년(1299)에 이르러서야 습의를

84) 활리길사에 의한 여러 사안에 걸친 개변 시도에 관해서는 이강한, 「征東行省官 闊里吉思의 고려제도 개변 시도」, 『한국사연구』 139, 한국사연구회, 2007 참조.

85) 활리길사의 개변 시도에 관해서는 그것이 세조구제를 훼손하고 무효화 하는 시도였다거나 元律을 고려에 강제 적용하여 고려의 관행을 바꾸려는 시도였다거나 1291년(세조 32, 충렬왕 17) 이후 元 내에서 전개되던 至元新格 국정이 한반도에까지 연장 적용된 것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익주, 「高麗·元關係의 構造와 高麗後期政治體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김형수, 「13세기 후반 고려의 노비변정과 성격」, 『경북사학』 19, 경북사학회, 1996; 김인호, 「고려의 元律 수용과 高麗律의 변화」, 『고려시대의 형법과 형정』(한국사론 33), 국사편찬위원회, 2002; 이강한, 앞의 논문, 2007 참조.

86) 한편 고려 儀制의 革正은 고려의 의례와 그 예식절차를 명분과 位格에 걸맞도록 구현하는 일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활리길사가 원의 朝儀를 기준으로 해서 고려의 조의 가운데 僭越한 점을 문제제기한 일은 이러한 차원에서였을 것이다. 『元史』 卷208, 列傳95 外夷1 高麗 "四年二月 征東行省平章闊里吉思言……又其大會王曲蓋龍扆警蹕諸臣舞蹈山呼 一如朝儀 僭擬過甚……".

도입한 사실은 이때까지 고려의 요하례 예식절차가 습의를 포함하여 원의 요하례(조하례) 예식절차와 다소 상이하게 운용되었을 것을 시사한다. 臣禮를 구현하는 요하례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예식절차는 임의적, 임기응변 식으로 운용되었을 수 있는 것이다. 원의 요하례(조하례)를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고려의 방식은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고, 활리길사의 이목에 革正 대상으로 포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활리길사는 습의 도입 시점 내지 그 무렵에 지방 아문의 요하례 의례절차 가운데 그동안 시행하지 않아 온 것들을 도입하였을 것이다. 원제와의 일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원제와의 일치를 도모하여 변개되었을 요하례 예식절차는 원(몽골) 지방 아문에서 행하는 것[87]과

87) 전고에서는 요하 의례의 구체적 예식절차가 元의 外路 衙門에서 거행되는 '拜賀行禮'를 참조하여 마련되었다고 한 바 있고, 또한 고려가 참조하였을 원의 외로 아문에서 행한 '拜賀行禮'를 제시한 바 있다(최종석, 앞의 논문, 2010, 247~249쪽). 그런데 고려가 활용하였을 外路 衙門에서 행한 '拜賀行禮'에 관한 검토 내용에서 오류가 있었다. 당시 제시한 의례절차는 요하례가 아니라 배표례에 해당하였다. 여기서 이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 오류 정정을 넘어 원의 지방 아문에서 행한 요하례의 예식절차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아쉽게도 배표례, 영조칙례 등과 달리 그 예식절차를 적시한 기록은 없다. 관련 연구조차 없기에, 요하례 예식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스케치 정도만 시도해 보려 한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요하례 예식절차를 파악하는 데 있어 부족하긴 하나 가장 유용한 자료는『大元聖政國朝典章』卷28, 禮部1 禮制1 朝賀 慶賀 기록이다. 이것은 '聖節拈香'을 위주로 예식절차를 적시해 놓은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聖節의 拈香은 期日 1개월 전에 몸소 寺觀에 나아가 聖壽萬安을 기도하는 도량을 설치하고 기일이 되면 滿願이 되어 散會한다(滿散). 기일 아침에 朝臣은 궁궐에 가서 稱賀한다. 外路의 官員은 僚屬, 儒生, 父老, 僧侶, 道士, 軍人, 胥吏 등을 이끌고, 香案에 장식을 하고, 춤과 雜技를 연행하고, 길 양측에서 공손히 (萬壽牌를) 맞이하고, 寺觀에서 궁정 방향을 바라보며 進香한다. 香案 아래에 官屬의 褥位를 설치하고, 席次에 따라 정렬한다. 먼저 두 번 拜禮한다. 班首는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香을 올린다. 舞蹈하고 叩頭하며 萬歲 삼창한다. 서리들은 큰 소리로 외친다 그대로 배례하고(就拜), 기상하고 두 번 배례한다. 의례가 종료되면 정렬하여 퇴거한다(捲班). 公廳에서 宴會를 행한 후에 退散한다.

> 기일 한 달 전에 내외문무관이 몸소 寺院・道觀에 가서 聖壽萬安을 祝延하는 도량을 설치하는 절차는 성절에 한정된 예식이었을 것이다. 위 기록은 성절이 위주가 된 것은 물론이요, '聖節拈香'을 위주로 작성되어 요하의례 전반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기일 당일의 경우에도 公廳으로 옮겨가기 전 寺院・道觀에서 거행되는 예식은 비교적 상세히 소개되어 있는 데 비해, 公廳으로 옮겨간 후의 내용은 '宴會를 행한 후에 退散한다'라고 하여 빈약하기 그지없다. 특히 성절와 정조의 구분 없이 요하례 3일 전에 寺院・道觀에서 행하는 습의 절차 및 공청에서 행하였을 拜賀行禮의 절차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연회 사실만이 보일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예식)도 없다. 위 기록에 따르면, 공청에서는 연회만이 있을 뿐 拜賀行禮가 없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大元聖政國朝典

기본적으로 동질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세부적으로는 달랐을 것이다. 무엇보다 班首가 지방 관부의 장관인 승상이면서 동시에 고려국왕이었고 이와 맞물려 행성관 외에도 고려 국왕의 신하가 의례에 참석한 상이한 여건은 세부적인 의례절차의 차이를 야기하였을 것이다. 사회 풍토가 상이한 데서 오는 차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습의 등의 원제(례) 수용은 활리길사 주도의 고려 儀制 革正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 달리 보자면, 이는 의례 면에서 여타 행성과 동조화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증치된 평장정사 직에 부임한 활리길사가 정동행성의 경영을 여타 행성과 다름없도록 실질화하는 작업을 주도한 상징적인 인물임을[88] 고려할 때 이 점은 좀 더 분명해진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

> (충렬왕 27년 1월 병진)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妙蓮寺에 행차하여 황제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祝釐). 각 路의 行省 以下官은 모두 정월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하고 복을 비는데, 이것은 대개 원의 儀禮이다.[89]

충렬왕 27년(1301) 정월 보름에 국왕이 백관을 이끌고 묘련사에 행차하여 황제를 위해 거행한 '祝釐'는 정동행성 승상을 매개로 한 외로아문 의례의 수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예식 실행의 기사에 부가된 "각 路의 行省 以下官은 모두 정월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하고 복을 비는데, 이것은 대개 원의 儀禮이

章』 卷28, 禮部1 禮制1 朝賀의 다른 條인 禮儀社直을 통해 공청에서 拜賀行禮가 거행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大元聖政國朝典章』 卷28, 禮部1 禮制1 朝賀의 軍官慶賀事理도 이 점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곧 元貞 2년(1296) 10월 湖廣行省이 받은(准) 樞密院의 咨文에 인용된 蒙古萬戶府의 申文에는 '天壽節 시 천호, 백호가 만호부까지 가서 拜賀하는 데 따른 문제를 지적하면서 군관으로 廳舍가 있는 자는 路府州縣城의 예를 따라 단지 廨宇에서 拜賀토록 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있다. 路府州縣城에서는 廨宇(公廳)에서 배하 의례를 거행한 것이다. 아쉬운 점은 軍官慶賀事理 조에서도 구체적인 배하 예식의 절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추측건대, 외로 아문에서 거행하는 拜賀行禮의 예식 절차는 元正儀를 참고하면서도 외로 아문에서 거행하는 실정에 맞게 변형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88) 이와 관련하여 이강한, 앞의 논문, 2007 참조.

89) 『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27년 1월 병진 "王率百官 幸妙蓮寺 爲皇帝祝釐 諸路行省以下官 皆以正月朔望 行香祝釐 盖元朝之禮也".

다(諸路行省以下官 皆以正月朔望 行香祝釐 盖元朝之禮也)"라고 한 언급은 이 점을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충렬왕은 정동행성 승상으로서 여타 행성관과 다름없이 이 예식을 거행한 것이다.[90]

원 내의 '行省以下官'은 관례·제도의 차원에서 정월 초하루와 보름에 사원·도관에 가서 황제의 축수를 기원하는 불교 의례를 거행하였다.[91] 고려는 그동안 이를 수용하지 않다가, 충렬왕 27년 1월 15일에 이르러 이 불교 의례를 시행한 것이다. 위 사례는 이러한 의례의 첫 거행을 알리는 특례여서 기록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단 건으로 그치는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해당 불교 의례는 정월 초하루와 보름에 정례적으로 거행되었을 것이다.

고려가 충렬왕 27년(1301) 1월 15일을 시작으로 정월 초하루와 보름에 사원에 가서 황제의 축수를 기원하는 불교 의례를 거행하게 된 것은 兩日 원 내에서 '行省以下官'이 거행하는 일련의 행사(요하례를 포함해서)를 과거에 비해 더 온전히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였을 것이다. 가령 정월 초하루에 거행된 행사에 초점을 맞춰 보면, 원 내의 '行省以下官'은 3일 전 사원·도관에서 요하례 습의를 행하였을 것이고, 정조 당일 아침에는 사원·도관에서 황제의 축수를 기원하는 불교 의례를 거행하고 그런 후 公廳으로 이동하여 요하례(拜賀行禮)를 거행하였을 것이다. 예식을 마친 뒤에는 공청에서 宴會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고려에서도 정조에 원 내 행성과 마찬가지로 황제의 축수를 기원하는 불교 의례까지 거행한 것이다.

원 내의 '行省以下官'과 마찬가지로 정월 초하루와 보름에 사원에 가서 황제의 축수를 기원하는 불교 의례를 거행한 것은 이에 앞서 이루어졌을, 요하례 방면에서 습의 등의 원제(례)를 수용한 일과 궤를 같이 하는 조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며칠 뒤에 聖甲日을 맞이하여 충렬왕이 행성관과 고려 신료를 이끌고 妙蓮寺에 행차하여 황제의 만수무강을 비는 예식을 거행

90) 최종석, 앞의 논문, 2019b, 168쪽 참조.
91) 森平雅彦, 『モンゴル覇権下の高麗－帝国秩序と王国の対応－』, 名古屋大学出版会, 2013의 '第六章 大元ウルスと高麗仏教' 참조.

한 것도[92] 마찬가지 취지에서였을 것이다. 황제의 본명일을 맞아 만수무강을 비는 예식은 이미 정동행성이 설치되기도 전인 충렬왕 2년(1276)에 시작되어[93] 그 이후로 지속해 온 것이긴 하나, 이때 행성관과 고려 신료가 함께 참석하는 방식으로 변모한 것은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하여 원(몽골) 외로아문의 해당 의례를 수용한 데서였을 것이다.[94]

이처럼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하여 원(몽골) 외로아문의 의례를 수용하는 움직임은 불교 의례로까지 확산해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활리길사의 개입 흔적은 감지되지 않는다. 고려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행한 일인 데서였을 것이다.[95] 충렬왕은 모종의 이유에서 정동행성 승상의 위상을 부각하면서 원(몽골) 외로아문에서 거행되는 의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듯하다.

한편 요하례 방면에서 습의 등의 원제(례) 수용은 활리길사 주도로 고려 儀制 革正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피동적 성격의 일로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활리길사 주도의 노비제 개혁이 고려 지배층의 저항에 직면하여 좌초된 것과 달리, 요하례 방면에서 습의 등의 원제(례) 수용은 그 과정에서 논란이 없었고 번복도 없었으며 이후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한 원(몽골) 외로아문 의례의 수용 움직임이 확대일로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활리길사의 부임 이전에 이미 고려 자체적으로 元制・禮(行省禮)를 수용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다음 기사가 그것이다.

> (충선왕 즉위년 2월 무오) 왕은 처음으로 정동행성에서 일을 보았다. 재추 및 行省左右司의 관리들이 알현하였는데, 元朝의 의례를 사용하였다.[96]

92) 『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27년 1월 을축 "王率行省官及群臣 幸妙蓮寺 爲帝聖甲日祝壽也".
93)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2년 1월 을해 "設法席于普濟寺 爲帝祝釐 每値聖甲日 行之 時謂之乙亥法席".
94) 최종석, 앞의 논문, 2019b, 170쪽. 한편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는 『통제조격』과 『원전장』을 활용하여 元의 관리가 正旦・聖節・本命日에 佛寺・道觀에 가서 황제를 위해 祈福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음을 규명하였고, 고려 국왕과 그 신하들도 正旦과 本命日에는 이러한 관례를 따랐다고 보았다. 森平雅彦, 앞의 책, 2013, 301~304쪽 참조.
95) 얼마 뒤 활리길사가 파직되어 몽골로 돌아간 것으로 보아, 이 일을 벌일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96)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즉위년 2월 무오 "王始署征東省事 宰樞及行省左右司官吏謁見 用元

위 기사에 앞서 충선왕은 고려국왕으로 즉위하였고, 이로 인해 당연직으로 정동행성 승상을 겸하게 되었을 것이다. 기사에서 보듯, 정동행성 승상으로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날에 宰樞 및 行省左右司 官吏가 충선왕을 알현하였는데, 이 예식은 元朝禮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알현하는 예식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고 종래와는 달리 元朝禮에 의거하여 정동행성 승상을 알현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元朝禮란 원 영내의 행성에서 행성관이 승상을 알현하는 예식을 가리켰을 것이다. 행성관 증치 이전에, 활리길사 부임 이전에 이미 일부 행성 의례를 수용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포함하여 요하례 방면에서 습의 등의 원제(례) 수용 및 원(몽골) 외로아문에서 거행하는 불교 의례의 시행은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하여 원(몽골) 외로아문의 의례를 수용하는 일련의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요하례 방면에서 습의 등의 원제(례) 수용이 비록 활리길사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동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넘어서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한 元制(禮) 수용이라는 시대 흐름 속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한편 습의 도입 이후 몇 년 뒤에 있은, 정동행성이 더는 독자적으로 진하사를 파견하지 않게 된 현상은 요하례 양상의 또 다른 변모를 시사할 것인데, 별도의 절을 두어 다루기에는 관련 사료가 없는 데다가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여 여기서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충렬왕 32년(1306) 7월 기묘일의 "(征東)行省은 摠郎 郭元振을 원에 보내 聖節을 경하하였다"[97]라는 사례를 끝으로, 정동행성이 별도로 사자를 보내 표문을 올리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98] 충렬왕 32년 7월 기묘일 이후로는 고려(군주)가 진하사를 보내는 식의 기록만이 있을 따름이다. 외면적으로는 고려(군주)와 정동행성이 각기 사자를 보내 표문을 올리는 일 가운데 전자는

朝禮".

97) 『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32년 7월 기묘 "行省遣摠郎郭元振如元 賀聖節".

98) 이에 관해서는 이명미, 앞의 책, 2016, 130~131쪽 참조.

남고 후자는 정리된 듯 보인다. 그런데 이는 독자적인 의례 수행의 주체로서 정동행성의 위상이 소멸하였음을 의미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한 위상을 발현하는 방식이 달라져 고려(국가)의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와 混一된 채 존속하였을 것이다.[99]

배표례를 통해 이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정동행성이 별도로 사자를 보내 표문을 올리는 일이 사라지면서, 정동행성이 고려(국가)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배표례를 거행하는 예식 또한 소멸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현이 공민왕을 대신하여 權斷征東省事의 위치에서 배표례를 거행한 사실에서, 정동행성(승상)이 고려(국가)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배표례를 거행하는 예식은 사라졌어도 이러한 예식은 잠복된 채 고려(군주)가 거행하는 배표례에 移入·혼합되었을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배표례 방면에서 '混一'의 방식은 고려(국가)와 정동행성 차원의 배표례가 거행 날짜를 달리한 채 각각 궁궐과 행성에서 거행되었던 것과 달리, 행성관과 고려 신료가 함께 배표례에 참석하고, 정조를 경하하는 표문의 배표례는 정전에서, 성절의 경우 정동행성에서 거행되는 변화된 방식이었을 것이다.[100]

세트를 이루는 배표례의 변화상을 통해 요하례 또한 '混一'의 방식으로 변화되었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관련 사료가 전혀 없어 구체적인 변화상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오류를 무릅쓰고 추측을 해 보자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요하례는 배표례와 달리 후기 정동행성이 설치되고 나서도 행성관과 고려 신료가 함께 참여하면서 정조 시에는 궁궐에서, 성절 시에는 행성에서 거행되었을 것이기에, 요하례의 변화상은 배표례와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混一'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가령, 종래에 요하례 예식절차는 고려(국가)와 정동행성 차원의 의절이 다소간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정동행성이 별도로 사자를 보내 표문을 올리는 일이 사라진 이후로는 '화학적', 유기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변화하였을 수 있다.[101] 관련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여기에 더해 추정을 거

99) 이명미, 앞의 책, 2016, 131쪽.
100) 이에 관해서는 최종석, 앞의 논문, 2019a, 178~179쪽 참조.

듭하면서 살을 붙이는 작업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원 복속기 내에서는 이 이후로 요하례 예식 구현의 양상 면에서 더 이상의 변화는 확인 내지 추정되지 않는다. 명에 사대하고 이와 맞물려 명 황제를 대상으로 요하례를 거행하게 되고 나서야 다시금 변화가 찾아왔을 것이다. 곧 고려말기에 고려는 명이 하사한 『蕃國儀注』에 수록된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를 토대로 그것의 복제품과도 같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요하례를 운영하였다.[102]

4. 맺음말

지금까지 원 복속기의 요하례를 대상으로 거행의 始點과 계기 및 예식 구현 양상의 변화 추이를 검토해 보았다. 검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갈음하고자 한다.

원종 14년(1273) 8월 성절 시에 요하례를 거행했다는 것은 기록상으로 확인되는 가장 앞선 요하례 사례이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처음으로 요하례를 거행했다고 하는 식의 언급이 확인되지 않아, 이것을 요하례 거행의 효시로 확정하는 것은 주저된다. 그리하여 원종 14년 성절 이전에 요하례를 거행하였을 가능성을 면밀히 탐색해 보았다. 원종 14년 성절에 앞서 요하례 거행의 효시가 될 수 있는 날은 원종 13년(1272) 1월 정조, 원종 13년 8월 성절, 원종 14년(1273) 1월 정조였는데, 본문에서 상세히 논증하였듯이, 요하례 거행의 효시는 이들 가운데 있지 않고 원종 14년 8월 성절 시에 치러진 요하례였다고 보는 편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

101) '화학적', 유기적 통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102) 고려말기 요하례 의례 구현의 양상에 관해서는 桑野榮治, 앞의 논문, 2004; 최종석, 앞의 논문, 2010; 최종석, 앞의 논문, 2019b; 최종석, 「고려말기 『蕃國儀注』의 활용 양상과 그 성격」, 『한국문화』 9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참조. 한편 조선에서는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를 토대로 하면서 훨씬 상세하고 보완적인 '正至及聖節望闕行禮儀'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요하례(망궐례)를 거행하였다.

원종 말기에 새롭게 등장한, 황제국에서 거행되는 조하례와 연동하여 요하례를 거행한 일은 동아시아 지평에서 보더라도 전례가 없는 현상이었다. 이처럼 유례를 찾을 길 없는, 고려 국왕이 황제를 대상으로 요하례를 거행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계기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당시 황제 궁궐에서 거행되는 조하례에 참석할 수 없는 처지인, 고려에 주재하는 원(몽골) 관원으로서의 다루가치와 그 요속은 마찬가지 처지의 원 영내 지방(관원)처럼 황제 성절을 맞아 요하례를 거행하려 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왕 원종은 요하례를 외면하거나 회피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혹은 다루가치 측이 자신들이 거행하고자 한 요하례에 원종의 참석을 강요하였을 수도 있고 이와 유사하게 요하례를 거행하지 않는 국왕의 행태를 문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 다루가치 측의 직접적 요구로 인해 요하례를 거행하였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계기에 의해서건, 고려 국왕의 황제를 대상으로 한 요하례 거행의 시작은 계획이 아니라, 우발의 산물이었다. 요하례 거행이 설령 원(몽골)을 기준으로 해서 고려의 제도를 改變하고자 한 다루가치의 압력의 산물이었다고 할 경우라 해도, 고려에서의 요하례 거행은 사전에 마련된 계획의 일환에서 추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하례와 함께 세트를 이루는 배표례는 제외한 채 요하례만을 거행한 사실로 미루어, 요하례의 거행은 고려에서도 황제 명절을 경하하는 예식을 원(몽골)의 지방 아문처럼 운용하겠다고 하는 식의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음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요하례 예식 구현의 변화상 내지 수렴 양상을 검토한 결과이다. 우선, 요하례를 시작하고 나서의 의례 양상은 국왕과 그 통솔 하의 群臣 및 (정)다루가치와 그 요속이 상호 병렬한 채 궁궐에서 함께 요하례를 거행하는 식이었을 것이다. 예식은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충렬왕 4년(1278)에 다루가치와 元軍이 철수할 때까지 지속되었을 것이다.

다루가치와 元軍의 철수 후 요하례는 국왕과 그 예하의 신하들에 의해 거행되었을 것이다. 물론 예식은 국왕을 정점으로 하였을 것이다. 다만 철수가 단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충렬왕 6년(1280) 8월에 2차 일본 원정을 위해

(전기)정동행성이 설치되는 변화가 있었기는 하나, 이는 충렬왕을 정점으로 한 요하례 구현에 별다른 변수로 작용하지는 못하였다. 충렬왕이 (전기)정동행성의 수장인 승상으로 임명된 데다가, 고려에 파견되어 온 원의 관원은 승상인 충렬왕의 屬官인 행성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1차 (전기)정동행성의 폐지 후로도 (전기)정동행성이 두 차례 더 설치되었기는 하나, 요하례 거행 양상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충렬왕 13년(1287)에 후기 정동행성으로도 불리는 정동행성이 復設된 후, 정동행성은 고려(국가)와 별도로 행성 차원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를 거행하였다. 그런데 요하례만은 현실 여건상 정동행성이 별도로 거행할 수 없었다. 대신에, 고려(국가)와 정동행성은 고려군주이자 정동행성 승상인 충렬왕을 정점으로 함께 요하례를 거행하면서도 행성이 독자적으로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를 수행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조 시에는 궁궐에서, 성절 시에는 행성에서 요하례를 거행하였을 것이다.

정동행성에 平章政事, 右丞 등의 재상직이 증치되고 활리길사 등의 원의 관리가 정동행성의 재상으로 파견된 시기에, 요하례 예식절차는 변개가 단행되었다. 곧 활리길사는 元朝禮 수용의 차원에서 요하례의 習儀를 도입·실행하였고, 습의 도입 시점 내지 그 무렵에 원 지방 아문에서 거행하는 요하례 의례절차를 보다 확대 적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습의 등의 元制(禮) 수용은 의례 면에서 여타 행성과 동조화하는 조치이기도 하였다. 한편 요하례 방면에서 습의 등의 원제(례) 수용이 비록 활리길사 주도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이는 피동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넘어서 내적 동력에 의해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元制(禮)를 수용하고자 하는 시대 흐름의 일환에서였을 것이다. 행성관 증치 이전에 이미 일부 행성 의례를 수용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거나, 활리길사와 별도로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원 외로아문의 의례를 수용하는 움직임이 확대된 것 등을 볼 때 그러하다.

마지막 변화라 볼 수 있는 대목은 충렬왕 32년(1306) 성절을 끝으로 정동행성이 더는 독자적으로 진하사를 파견하지 않게 된 현상이다. 이는 정동행성이 고려(국가)와 별도로 독자적인 의례를 구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데 따른

변화였을 것이다. 이후로 정동행성 차원의 의례는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고려(국가)의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와 混一된 채 존속하였을 것이다. 요하례도 이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한편 원 복속기 내에서는 이 이후로 요하례 예식 구현의 양상 면에서 더 이상의 변화는 없었던 듯싶다. 명에 사대하고 이와 맞물려 명 황제를 대상으로 요하례를 거행하게 되고 나서야 다시금 요하례 방면에서 변화가 발생하였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元史』, 『大元聖政國朝典章』, 『通制條格』

森平雅彦, 『モンゴル覇権下の高麗－帝国秩序と王国の対応－』, 名古屋大学出版会, 2013.
이명미,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혜안, 2016.

고명수, 「고려 주재 다루가치의 置廢경위와 존재양태」, 『지역과 역사』 39, 부경역사연구소, 2016.
고병익, 「麗代征東行省의 硏究」 上·下, 『역사학보』 14·19, 역사학회, 1961·1962.
김보광, 「고려 내 다루가치의 존재 양상과 영향－다루가치를 통한 몽골 지배방식의 경험－」, 『역사와 현실』 99, 한국역사연구회, 2016.
김인호, 「고려의 元律 수용과 高麗律의 변화」, 『고려시대의 형법과 형정』(한국사론 33), 국사편찬위원회, 2002.
김형수, 「13세기 후반 고려의 노비변정과 성격」, 『경북사학』 19, 경북사학회, 1996.
김혜원, 「忠烈王의 入元行績의 性格」, 『高麗史의 諸問題』(邊太燮 編), 삼영사, 1985.
윤석호, 「조선조 望闕禮의 중층적 의례구조와 성격」, 『한국사상사학』 43, 한국사상사학회, 2013.
이강한, 「征東行省官 閻里吉思의 고려제도 개변 시도」, 『힌국사연구』 139, 한국사연구회, 2007.
이민기, 「고려시대 元正朝賀儀의 구성과 의미」, 『동방학지』 18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9.
이익주, 「高麗·元關係의 構造와 高麗後期政治體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이정란, 「고려 전기 上表 儀禮와 국왕 권위의 顯現」, 『사림』 68, 수선사학회, 2019.
장동익, 「前期征東行省의 置廢에 대한 檢討」, 『대구사학』 32, 대구사학회, 1987.
_____, 「征東行省의 硏究」, 『동방학지』 6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0.
정동훈, 「고려시대 사신 영접 의례의 변동과 국가 위상」, 『역사와 현실』 98, 한국역사연구회, 2015.
정은정, 「14세기 元明교체기의 胡·漢 共存과 개경의 望闕禮 공간」, 『한국중세사연구』 49, 한국중세사학회, 2017.
최종석, 「고려시대 朝賀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 『한국문화』 5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_____, 「중화 보편, 딜레마, 창의의 메커니즘－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 성격의 재검토－」, 『조선시대 예교 담론과 예제 질서』, 소명출판, 2016.
_____, 「고려 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 의식'의 탄생과 내향화－조선적 자기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민족문화연구』 7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_____, 「고려후기 拜表禮의 창출·존속과 몽골 임팩트」, 『한국문화』 8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a.
_____, 앞의 논문, 2010; 최종석, 「고려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 『민족문화연구』 8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b.

桑野榮治, 「高麗末期の儀禮と國際環境－對明遙拜儀禮の創出－」, 『九留米大學文學部紀要(國際文化學科編)』 21, 2004.

北村秀人,「高麗に於ける征東行省について」,『朝鮮學報』32, 天理大學朝鮮學會, 1964.
元代の法制 研究班,「『元典章 禮部』校定と譯注(一)」,『東方學報』81,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2007.
王福利,「元代朝儀的制定及其特點」,『內蒙古社會科學』, 第 27卷 第 1期, 內蒙古自治区社会科学院, 2006.
許正弘,「元朝皇帝天壽聖節考」,『成大歷史學報』第四十四號, 成功大學歷史學系, 2013年 6月.

The Performance of Yoha(遙賀) ritual and its Change in the Mongol Subjugation period

Choi, Jongsuk*

This paper is the first research on Yoha(遙賀) ritual held in the Mongol subjugation period. The Yoha(遙賀) ritual was a ritual at which the king of Koryo, who was unable to attend Choha(朝賀) ritual held in empire, as the status of emperor's vasal celebrated Chinese emperor's holiday from a distance.

Kept in mind the fact that performing Yoha(遙賀) ritual held in the Mongol subjugation period in conjunction with Choha(朝賀) ritual held in empire was unprecedented in East Asia, I argued for the fact that Yoha(遙賀) ritual was first performed at Sungchul(聖節) in August, the 14th year of King Wonjong's reign(1273). Also, I explored why the unprecedented Yoha(遙賀) ritual appeared at this time and examined changes of Yoha(遙賀) ritual in the form of the rite under the conditions of the Mongol subjugation period. In particular, the changes of Yoha(遙賀) ritual in the form of the rite were taken into account by considering the changes in the Koryo-Mongol relationship and considering the variable, Jeongdong Haengseong Provincial Governor(征東行省丞相) to match its importance.

Key words : Choha(朝賀) ritual, Yoha(遙賀) ritual, Jeongdong Haengseong(征東行省), Mongol Subjugation period, Darugachi, Koryo

논문투고일 : 2020년 10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11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11월 27일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Korean History, Dongduk Womens University